

제148회 거창군의회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8 ~ 1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08 ~ 18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 ~ 19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8 ~ 20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08 ~ 21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29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7
----------	-----------

제출연월일	2008. 6.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아주보건진료소가 이전·개소하면서 이용주민들이 아주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통하여 보건진료소 명칭변경요구가 있어,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관할지역명과 부합되게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아주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함(안 별표)
 - 아주보건진료소
 - ⇒ 하성보건진료소
 -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418-2번지
 - ⇒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78-2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4. 15 ~ 2008. 5. 4)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을 “군”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별표 1 중 아주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하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478-2번지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u>거창군</u>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군</u> ----- ----- ----- ----- -----.</p>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u>거창군</u>(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단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u>군</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설치)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u>별표 1</u>과 같다.</p>	<p>제8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별표와</u> -----.</p>												
<p>[별표 1]</p>	<p>[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칭</th> <th style="width: 30%;">위치</th> <th style="width: 50%;">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u>이주</u> 보건진료소</td> <td>거창군 웅양면 <u>신촌리 1418-2번지</u></td> <td>송산, 이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u>이주</u>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u>신촌리 1418-2번지</u>	송산, 이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칭</th> <th style="width: 30%;">위치</th> <th style="width: 50%;">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u>하성</u> 보건진료소</td> <td>거창군 웅양면 <u>한기리 478-2번지</u></td> <td>송산, 이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u>하성</u>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u>한기리 478-2번지</u>	송산, 이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명칭	위치	관할구역											
<u>이주</u>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u>신촌리 1418-2번지</u>	송산, 이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명칭	위치	관할구역											
<u>하성</u>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u>한기리 478-2번지</u>	송산, 이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8
----------	-----------

제출연월일	2008. 6.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현실에 맞지 않는 세출 규정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을 삭제하여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차장법」
-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나. 세출 범위를 확대 함(안 제4조제4항)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

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3조제7호)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함(안 제3조·제4조·제7조·제9조)

- ~규정에 의한(다) ⇒ 에 따른(다)
- 각호 ⇒ 각 호
- 기타 ⇒ 그 밖에(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 (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100,125천원(2008년 기정예산에 반영됨)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8. 4. 16. ~ 5. 5.)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이 회계에”를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6호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서”로 하며, 같은 조제7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

제7조제1항 중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제3조제1호·제2호·제3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차장법」 제2조를 준용한다.</p>	<p>제2조(정의)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p>
<p>제3조(세입) 이 회계에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 5. (생략) 6. 거창군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p>제3조(세입)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 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 -----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 -----. 3. 법 제30조에 따른 ----- -----. 4. ~ 5. (현행과 같음) 6.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서----- -----.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 노외 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p> <p>2.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 노외 주차장의 관리</p> <p>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 <신 설></p>	<p>제4조(세출) -----각 호에 따른다.</p> <p>1.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p> <p>2. ----- 법 제13조에 따른 -----</p> <p>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p> <p>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 한함</p>
<p>제7조(세입징수) ①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하고자 할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p>	<p>제7조(세입징수) ①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p> <p>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p>
<p>제9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때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9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p>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19
----------	-----------

제출연월일	2008. 6.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개정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단서)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 및 내용을 변경함(안 제3조제15조)

○ 배기량 800cc이하 자동차(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긴급자동차 정의)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

○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기타 ⇒ 그 밖에(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4. 19. ~ 5. 8.)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를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5호 중 “영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납부방법에 의하지”를 “징수방법을 따르지”로, “때에는 군수를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를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별지2호 서식에 의하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를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기”를 “이미”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호에 의해”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제10조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규칙 제3조의 규정을”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조의2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로 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300m이내”를 “300미터 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1에 의거”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6조 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거”를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별지 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납부일로부터”를 “납부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p>
<p>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p> <p>① ~ ②(생략)</p> <p>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p> <p>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같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p>4.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 : 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 -----.</p> <p>2.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법 제19조의3에 따라 ----- -----.</p> <p>3.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 ----- -----해당----- -----.</p> <p>4. ----- ----- 제6항에 따라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 영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u>별표1</u>과 같이 한다. <u><신 설></u></p> <p>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p>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분 단위로 <u>별표1</u>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제4조(주차 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5.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 ----- -----.</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u>별표 1</u> ----- 다만,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 -----.</p> <p>③ ----- --<u>징수방법을 따르지</u>----- --- <u>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u> ----- -----.</p> <p>1. <u>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u>----- ----- ----- ----- ----- -----.</p> <p>2.----- --- <u>별표 1</u> ----- -----.</p> <p>제4조(주차 거부금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 략)</p> <p>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안전 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p> <p>1. ~ 3. (생 략)</p> <p>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p> <p>② 노외주차장의 표시의 규격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생 략)</p> <p>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3. 기타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 ----- ----- 각 호 ----- -----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 -----</p> <p>②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 ----- ----- ----- 각 호 ----- -----.</p> <p>3. 그 밖에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설정방법과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선정상법</th> <th style="width: 40%;">납부하여야할 금액</th> <th style="width: 35%;">납부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제1항 제1호의 경우</td> <td>수의계약</td> <td>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td> <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 </tr> <tr> <td>제1항 제2호의 경우</td> <td>수의계약</td> <td>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td> <td>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r> <td>그 밖의 경우</td> <td>경쟁입찰</td> <td>입찰가격</td> <td>3개월 단위로 선납</td> </tr> </tbody> </table>	구분	선정상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p>② 제1항에 따른 ----- ----- -----.</p>
구분	선정상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 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p>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p>	<p>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① ----- --<u>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미</u> ----- ----- -----<u>그 밖에</u>----- ----- ----- <u>각 호에 따라</u>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에 의해 환불한다.</u></p> <p>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p> <p>2. ~ 4. (생략)</p> <p>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별표1</u>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p> <p>1. ~ 2. (생략)</p> <p>3. 배기량 800cc이하 자동차(경자동차)</p> <p>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u>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u>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u>당해</u>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p> <p>제9조(요금의 감면) ① ----- ----- -<u>각 호</u> ----- -----.</p> <p>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표 1</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배기량 1,000cc이하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p> <p>제10조(이용제한) ----- ---- <u>법 제10조에 따라</u> -----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u>해당</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 방법과 배치 등은 <u>별표3</u>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p>② 주차구획선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u>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 <u>별표 3</u> ----- ----- ----- -----.</p> <p>② ----- 「<u>주차장법 시행규칙</u>」 제3조를 -----.</p>
<p>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u>영 제3조의2</u>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u>영 제3조의2</u>에 따른 ----- ----- ----- <u>각 호</u>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주차장의 설치 심의 등) <u>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u>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13조(주차장의 설치 심의 등) <u>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u> ----- ----- -----.</p> <p>1.~ 3. (현행과 같음)</p>
<p>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u>별표2</u>와 같다.</p>	<p>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 ----- <u>별표 2</u> -----.</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u>법 제19조 제6항</u>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u>법 제19조제6항</u> 본문에 따라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 ~ 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p> <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p> <p>-----.</p> <p>4. -----해당-----</p> <p>-----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p> <p>-----.</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p> <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p> <p><u>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u></p>	<p>-----.</p> <p>4. -----</p> <p>-----.</p> <p><u>법 제19조제4항에 따라</u> -----</p> <p>-----</p> <p>-----</p> <p><u>300미터 내</u>-----.</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u>별지5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p>② <u>영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u>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u>별표1에 의거</u>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정기 주차권 요금(주, 야간)으로 한다.</p>	<p>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p> <p>-----</p> <p>----- <u>별지 제5호서식</u> -----</p> <p>-----.</p> <p>② <u>영 제10조제1항에 따른</u> -----</p> <p>--- <u>별표 1에 따라</u> -----</p> <p>-----</p> <p>-----</p> <p>-----.</p>
<p>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 <u>영 제6조 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거</u>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u>각호</u>의</p>	<p>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 <u>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u> -----</p> <p>-----</p> <p>-----</p> <p>----- <u>각 호</u>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u>별지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u></p>
<p>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u>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u>납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u></p> <p>② 군수는 <u>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u>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u>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④ <u>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0조(과징금 처분) ① --- <u>영 제17조제1항에 따라</u> -----</p> <p>-----</p> <p>-----</p> <p>-----</p> <p>-----</p> <p>-----</p> <p>--- <u>납부일부터</u> -----.</p> <p>② ----- <u>제1항에 따라</u> -----</p> <p>-----</p> <p>----- <u>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u> -----</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에 따라</u> -----</p> <p>-----</p> <p>-----.</p>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20
----------	-----------

제출연월일	2008. 6.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 여 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생활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법률용어를 순화함(안 제6조·제7조·제9조)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기타 ⇒ 그 밖에

○ 승락서 ⇒ 승낙서

○ 허위 ⇒ 거짓

○ 손괴 ⇒ 손상

○ 때에는는 ⇒ 경우에는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4. 11. ~ 4. 30.)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복지관”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로, “별표 1”을 “별표”로, “승락서”를 “승낙서”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허가 취소등”을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제9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제7호·제8호·제9호를 각각 같은 조제2호·제3호·제4호로 한다.

제8조 중 “손괴”를 “손상”으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 ~ 제5조 <삭제 2000. 9. 20.></p> <p>제6조(시설의 사용) ① <u>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입하고 사용 승락서를 교부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③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생활보호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u></p> <p>2. <u>기타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7조(사용허가 취소등)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p> <p>1. <삭제 2000.9.20.></p> <p>2. (생 략)</p> <p>3. ~ 6. <삭제 2000. 9. 20.></p> <p>7. (생 략)</p> <p>8. (생 략)</p> <p>9.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u></p>	<p>제1조(목적)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u> -----</p> <p>-----</p> <p>-----.</p> <p>제2조(시설의 사용) ①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u> -----</p> <p>-----<u>별표</u>-----</p> <p>----- <u>승낙서</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u>-----</p> <p>2. <u>그 밖에</u> -----</p> <p>-----</p> <p>제3조(사용허가 취소 등)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7호와 같음)</p> <p>3. (현행 제8호와 같음)</p> <p>4. <u>거짓이나</u>-----</p> <p>-----<u>경우</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손해배상)복지관의 사용중 관내 시설물을 무단절취 또는 손괴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손해배상)----- -----손상----- ----- ----</p>
<p>제9조(위탁운영)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시킬 수 있다.</p>	<p>제5조(위탁운영) ----- -----경우에 는 ----- ----- -----.</p>
<p>제10조 (생 략)</p>	<p>제6조 (현행 제10조와 같음)</p>
<p>별표 1</p>	<p>별표</p>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08 ~ 21
----------	-----------

제출연월일	2008. 6.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이농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가 및 사용일수가 적은 각종 농업기계를 구입함에 따른 농가부채 상승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우리 군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농업기계임대은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다. 임대은행의 설치 및 기능, 운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 라. 임대기준 및 임대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 마. 임대농기계의 반환 및 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제14조)
- 바. 임대사업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사. 비치대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719,000천원(2008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됨)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8. 4. 10. ~ 4. 29.)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군 농업기계임대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은행의 설치) 임대은행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임대은행” (이하 “임대은행”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 (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경지를 이용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임대료”란 임차인이 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 금고에 납부하는 농기계 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임대은행의 기능) 임대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대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임대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균비로 한다.

② 임대은행의 설치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③ 임대은행의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요원·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대허가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임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임대하는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하는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임차인은 교육을 받은 다음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허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도록 하되, 1농가당 1기종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내로 한다. 다만, 임차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허가 신청서 제출과 임대료 납부는 농기계를 사용한 후 반납할 때 하게 할 수 있다.

③ 임대허가 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를 일단위로 계산하며, 입고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농기계의 임대허가는 자가영농에 한정한다.

⑤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출고하여야 하며, 입고 때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임대료는 농기계 출고 전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감액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자가영농에 사용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잔여일로 한다.

제12조(농기계의 반납)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 깨끗이 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대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대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허가 기간 중 임대허가 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의 출고이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계획 및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12월 중에, 임대은행 운영결과는 다음해 1월 중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치대장) 임대은행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농업기계 임대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규 격	구입가격	1일 사용료	비 고
전 기종 및 작업기	차주 및 부착형	400만원 미만	10,000원	
	”	400만원 ~ 1,000만원 미만	20,000원	
	”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30,000원	
	”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50,000원	
	”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0,000원	
	”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80,000원	
	”	5,000만원 이상	100,000원	

농기계 임대허가 신청서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의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임 차 인	주 소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 기 계 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임 대 료	금 원				
작업장 위치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작 업 종 류				작업량	m ²

□ 사용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1. 임차인은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2. 부과된 임대료를 지정기간 안에 납부한다.
3. 1일 이상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하는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운전미숙, 부주의, 고의 등으로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수리 또는 보상한다.
6.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운반비, 연료비, 영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대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위의 농기계 임대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임차인) :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임 차 인	주 소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기계명				수 량	대
부속작업기				수 량	대
				수 량	대
				수 량	대
임대기간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감면금액	금 원				
작업위치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작업내용				작업량	m ²
감면신청 사유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위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소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담당자	담당	과장	소장	결재
						재

구 입 금 액	(단위 : 원)			
합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그 밖에

구 입 일 자		형식(규격)	
내 구 연 한		제조번호	
성 능(사 양)			
주 요 특 징			
제 조 회 사 (구 입 처)	회 사 명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사 진(뒷면)	
임대농업기계	관리번호 명판

